



제 4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풋살장업의 신고 체육시설업 포함 및  
체육시설과 주거지역 이격거리 규정 신설 〉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987호)

2025.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용규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풋살장업의 신고 체육시설업 포함 .....     | 2 |
| 2. 체육시설과 주거지역 이격거리 규정 신설 ..... | 8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5. 8. 5.
3. 회 부 일: 2025. 8. 6.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풋살’(5인제 미니 축구게임)이 인기를 얻으면서 대형마트 옥상이나 주거 밀집지역과 가까운 곳에 풋살장이 설치되는 등 전국적으로 풋살장이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풋살장은 현행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등록 또는 신고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풋살장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풋살장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풋살장의 소음과 조명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풋살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체육시설과 주거지역 간의 최소거리를 둬으로써 풋살장 이용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체육시설의 소음과 조명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1조 및 제30조 등).

### Ⅲ. 검토의견

## 1. 풋살장업의 신고 체육시설업 포함

###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신고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풋살장업을 새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br>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br>-----.                                                      |
| 1. (생략)                                                                                                                                             | 1. (현행과 같음)                                                                           |
|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u>인공암벽장업</u> | 2. -----<br>-----<br>-----<br>-----<br>-----<br>-----<br>-----인<br><u>공암벽장업, 풋살장업</u>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다. 검토의견

○ 최근 풋살 종목이 많은 인기를 얻으며, 풋살장이 많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 공공체육시설 중 풋살장은 55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체육교습업 중 ‘풋살’이나 ‘축구+풋살’로 신고된 사업장 수는 총 276개소임.

### [ 공공체육시설 중 풋살장 현황 ]

(단위: 개소)

| 서울  | 부산 | 인천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강원  |
|-----|----|----|----|----|----|----|----|-----|
| 28  | 6  | 9  | 7  | 4  | 5  | 24 | 12 | 68  |
| 경기  | 경남 | 경북 | 전남 | 전북 | 충남 | 충북 | 제주 | 총계  |
| 162 | 70 | 64 | 27 | 24 | 21 | 20 | 6  | 557 |

출처: 2024 전국 공공체육시설현황 현황

### [ 체육교습업(풋살) 현황 ]

(단위: 개소)

| 서울 | 부산 | 인천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강원  |
|----|----|----|----|----|----|----|----|-----|
| 32 | 14 | 1  | 9  | 2  | 1  | 1  | -  | 1   |
| 경기 | 경남 | 경북 | 전남 | 전북 | 충남 | 충북 | 제주 | 총계  |
| 15 | 3  | 7  | 1  | 19 | -  | -  | 2  | 108 |

출처: 2024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

### [ 체육교습업(축구+풋살) 현황 ]

(단위: 개소)

| 서울 | 부산 | 인천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강원  |
|----|----|----|----|----|----|----|----|-----|
| 6  | 6  | 20 | 18 | 1  | 5  | -  | -  | 7   |
| 경기 | 경남 | 경북 | 전남 | 전북 | 충남 | 충북 | 제주 | 총계  |
| 43 | 42 | 3  | -  | -  | 4  | 12 | 1  | 168 |

출처: 2024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

- 그런데 풋살장업이 체육시설업으로 규정되지 않음에 따라 체육 시설업이 준수해야 할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소음, 빛 공해 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 현재 풋살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로 규정이 되었음<sup>1)</sup>. 체육시설은 동법 제4조의3에 따른 안전점검<sup>2)</sup>을 받을 의무가 있으나,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11조), 준수사항(제22조), 안전·위생 기준 등(제24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음.

1)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 구 분   | 체 육 시 설 종 류                                                                                                                                                                                                                                                                                                                                          |
|-------|------------------------------------------------------------------------------------------------------------------------------------------------------------------------------------------------------------------------------------------------------------------------------------------------------------------------------------------------------|
| 운동 종목 |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 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인공암벽장, 파크골프장, <b>풋살장</b> ,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
| 시설 형태 |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

-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를 위임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휴업 또는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업 관련 주요 규제 조항 ]

| 조문제목                | 조문내용                                                                                                                                                                                                                                                                                                                                                                                                                                                                                                                                                                                                                                                                                                                               |
|---------------------|------------------------------------------------------------------------------------------------------------------------------------------------------------------------------------------------------------------------------------------------------------------------------------------------------------------------------------------------------------------------------------------------------------------------------------------------------------------------------------------------------------------------------------------------------------------------------------------------------------------------------------------------------------------------------------------------------------------------------------|
| 제11조(시설 기준 등)       | <p>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p>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p>                                                                                                                                                                                                                                                                                                                                                                                                                                                                                                                      |
|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 <p>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음·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li> <li>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li> <li>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li> <li>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li> <li>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li> </ol> </li> <li>5.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 외에 회원의 운영 및 일반이용자의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li> </ol> <p>②무도학원업자·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p> |

|                  |                                                                                                                                                                                                                                                                                                      |
|------------------|------------------------------------------------------------------------------------------------------------------------------------------------------------------------------------------------------------------------------------------------------------------------------------------------------|
|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 <p>①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
| 제24조(안전·위생 기준 등) | <p>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임무, 수질 관리,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및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p> <p>②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제1항의 안전·위생 기준에 따른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p> <p>③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제2항의 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 이용을 거절하거나 중지하게 할 수 있다.</p> |
| 제26조(보험 가입)      | <p>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 개정안은 풋살장을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시킴으로써 체육시설업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적용함으로써 미비한 규제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음.

○ 다만, 부칙 제1조(시행일)<sup>3)</sup>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업으로 신설 시 시설업장의 시설 및 위생·안전기준, 체육지도자 배치 등의 규칙 설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관련 업계 및 협단체와의 소통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이 필요하

3)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 각 기준안 마련 및 규제 심사 등을 위해 1년 정도의 시행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2. 체육시설과 주거지역 이격거리 규정 신설

###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체육시설과 주거지역 간 최소한의 거리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등).

###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1조(시설 기준 등) ① (생략)                                                                                                                   | 제11조(시설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
| <u>&lt;신설&gt;</u>                                                                                                                      | ②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체육시설과 주거지역 간 최소한의 거리(이하 “이격거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른 이격거리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 ② (생략)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 <u>&lt;신설&gt;</u>                                                                                                                      | ④ 제2항에 따른 주거지역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 |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br>-----<br>-----<br>-- <u>설치하거나 이격거리를 두기</u> ----<br>-----<br>-----<br>-----.                     |

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생략)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① 제10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30조(시정명령)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  
-----.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  
-----  
-----시설 및 이격거리를-----  
-----  
-----.  
-----  
-----.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① -----  
-----  
-----시설 및 이격거리를-----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시정명령) -----  
-----  
-----  
-----  
-----.

|                              |                                               |
|------------------------------|-----------------------------------------------|
| 1. (생략)<br><u>&lt;신설&gt;</u> | 1. (현행과 같음)<br>2.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
| 2. ~ 8. (생략)                 | 3. ~ 9. (현행 제2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

## 다. 검토의견

- 최근 주택가 인근 위치한 풋살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빛공해 등으로 인해 풋살장과 인근 주민들 간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도심지역이나,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한 풋살장의 경우, 실내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으나 건물 옥상에서 운영되는 경우도 다수 있으며, 22시 이후 늦은 밤에도 영업하는 경우들도 존재함.
- 개정안은 체육시설과 주거지역 간 최소 이격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소음, 빛 공해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소음과 빛 공해 등과 관련한 법 규정으로는 「소음·진동관리법」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등이 있음.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소음의 발생 장소로서 체육도장업, 체육단련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등 일부 신고 체육시설업만을 규정<sup>4)</sup>하고 있으며,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에는 체육시설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으로 「소음·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빛공해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sup>5)</sup>.

○ 개정안은 소음, 빛 공해 등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위험물 저장시설, 혐오시설 등과 달리 체육시설의 경우 생활체육 참여를 위한 주민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특성이 있음. 또한, 개정안은 일률적으로 체육시설에 이격거리를 두도록 규정

---

4)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소음의 발생 장소) 법 제2조제1호에서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2.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콜라텍업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소음·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 5. <생 략>

②무도학원업자·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소음, 빛 공해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소음, 빛공해 등은 일률적인 규제보다 각 소음, 빛공해 발생지역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규제가 요구되는바, 각 지역의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을 것으로 보임.
- 셋째, 체육시설업자가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취지를 고려했을 때, 소음, 빛공해 등을 규율하는 개별법에서 체육시설업의 준수사항을 규율하고, 동 법에서는 이를 준수할 의무만을 규정하는 것이 법률체계상 명확할 것으로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격거리 신설은 체육시설 신설·운영에 적용되는 새로운 입지규제로 작용하여 체육시설업 활성화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제20조의 신고 체육시설의 경우 업종 대다수가 이용자의 생활체육 근린생활체육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물리적인 이격거리를 신설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임.

|              |
|--------------|
| 문 의 처        |
| 02)6788-5375 |